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8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4. 6. 13.(목)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준 의원 외 8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고병준 의원 외 8명

○ 제안일 : 2024. 5. 24.

○ 회부일 : 2024. 5. 28. (의안번호 : 24-68)

2. 제안이유

○ 「독서문화진흥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소외인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마포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3조)

○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제3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제5조

○ 입법예고: 2024. 5. 16. ~ 5. 22.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독서문화진흥법」이 2024. 5. 1.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독서소외인에게 균등한 독서 기회를 보장하고 나아가 마포구민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추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항별 구성 및 내용

- **제2조제3항 개정**: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복지시설 등"을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으로 변경.
- **제3조제2항 개정**: 기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구립 도서관의 운영과 연계 방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

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지원 및 지역축제와의 연계 방안

·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

(기존 제5호 삭제, 기존 제6호를 제5호로 변경)

- **제5조제4항 개정**

· 기존 제7호를 제8호로 변경.

· 새로운 제7호 '7.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신설

○ **서울특별시 자치구 지역서점 현황(2024. 4. 기준)**

연번	지 역	서점 수	연번	지 역	서점 수
1	**마포구**	**75**	14	서대문구	24
2	강남구	29	15	서초구	19
3	강동구	16	16	성동구	17
4	강북구	10	17	성북구	23
5	강서구	30	18	송파구	23
6	관악구	33	19	양천구	21
7	광진구	15	20	영등포구	21
8	구로구	12	21	용산구	21
9	금천구	10	22	은평구	21
10	노원구	24	23	종로구	66
11	도봉구	17	24	중구	35
12	동대문구	8	25	중랑구	13
13	동작구	22	'서울의 책방찾기' 참조 (총 602곳)		

6.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이 2024. 5. 1. 일부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지역서점 현황을 보면 타 자치구보다 많은 마포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관내 축제와 지역서점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독서소외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관련 조례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판과 관련된 북 스타트 사업을 2022년도까지 진행했으나, 자치구 보조금 지원 방식에서 서울시 직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23년도부터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이 위축되는 현상이 보이므로, 마포구도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연구·발굴하고, 구 예산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독서문화진흥법」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4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시행 2019.04.25.] (제정) 2019.04.25 조례 제1213호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